

■ 목 차

■ 소식 ■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설립..... 3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3월 25일 양곤에서 미얀마 세미나 개최..... 5
 지평, 상해 사무소 전성진 고문 영입 6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제조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 매각 자문..... 7
 한국 법인의 중국 내국인법인 증자참여 법률검토..... 7
 한국 교육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파트너와의 합작교육사업 자문..... 8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 지분양수도 자문..... 8
 홍콩계 중국 회사를 대리하여 한국 투자 및 법인설립 자문 9
 한국인 마약밀수 형사사건 대리 9
[캄보디아] 캄보디아 최고층 사무용 건물 보유 법인 지분 매각 자문.....10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중국 「외국투자법(초안)」 공개11
[베트남] 주택법 개정13
[러시아]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경제제재대상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17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상해자유무역구 범위 확대, 금융업 추가 개방.....21
 외국투자법(초안), 대부분 외상투자 인허가 취소21
 “3증합일(三證合一)” 전국에서 시행 예정21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등록제 가동22

[캄보디아]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시행령(Sub Decree on Tax Incentives In Securities Sector) 시행..23

2015년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PRAKAS on Determination of Minimum Wage for Workers/Employees in the Textile, Garment and Footwear Industries in 2015).....23

■ 소식 ■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설립

법무법인 지평은 4월 러시아 대형 로펌인 YUST와 제휴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한국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지평은 중국 및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7개 해외사무소에 이어, 러시아에 8번째 해외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리걸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평과 제휴한 YUST는 1992년에 설립된 러시아 대형 로컬 로펌으로, 8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다수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러시아 고객 및 외국계 고객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문 로펌입니다.

지평은 YUST와 협력하여 러시아 현지와 한국에서 동시에 유기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초대 러시아 사무소장으로 파견되는 이승민 러시아변호사는 러시아 명문인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학부부터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 지평에서 8년 동안 러시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는 모스크바에 상주하면서 한국기업을 밀착하여 자문할 예정입니다.

지평은 2005년에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약 180여 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이승민 러시아변호사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IME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류혜정 변호사(연수원 34기),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MGIMO)에서 금융(조세)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변호사 최초로 러시아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채희석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M&A, 금융, 회사, SOC, FDI, 조세 등 산업별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평 모스크바 사무소

43, Sivtsev Vrazhek Lane, 119002 Moscow, Russia

Tel. + 7 495 795 0845 Fax. +7 499 241 1948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Law&Biz] 법률 영토 넓히는 지평...러시아 이어 독일 진출 '박차'(2015. 3. 10.)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팀]



류혜정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소식 ■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3월 25일 양곤에서 미얀마 세미나 개최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은 3월 25일 미얀마 양곤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고 시장이 개방된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의 통합 투자법 제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법률들과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불명확한 규정, 당국의 실무 관행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언어적, 문화적 제약으로 정보가 부족한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평 미얀마는 미얀마에서 3년 가까운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고객이 보다 안전하게 미얀마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 미얀마는 그간 쌓아온 실무 경험을 미얀마 현지의 고객 및 교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양곤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평의 경험을 고객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소식 ■

지평, 상해 사무소 전성진 고문 영입



(법무법인 지평 전성진 고문)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는 3월 전성진 고문을 영입하여 중국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전성진 고문은 30년 가까이 LG상사에 근무하면서 대만, 홍콩, 북경, 상해 지사장과 중국본부장을 역임한 현장 출신 중국전문가입니다. 또한 LG상사의 주요 사업부문인 석유화학사업부와 에너지(자원개발) 사업부장, 부사장으로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회사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경영인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깊고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대륙 상해대표처, 우림건설 중국법인, LS전선 중국법인 등의 고문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중국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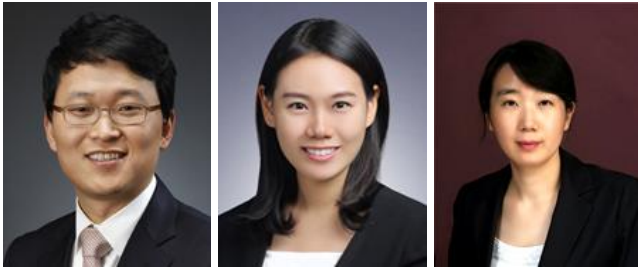
앞으로도 저희 지평 상해사무소는 고객분들께 더욱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제조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 매각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제조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 매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내국인법인 증자참여 법률검토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법인의 중국 내국인법인 증자참여 관련 법률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교육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파트너와의 합작교육사업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교육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파트너와의 합작교육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경염동 중국변호사 채광호 중국변호사 장욱염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 지분양수도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 지분양수도 관련 계약 검토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경염동 중국변호사 채광호 중국변호사 장욱염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홍콩계 중국 회사를 대리하여 한국 투자 및 법인설립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홍콩계 중국 회사를 대리하여 한국 투자 및 법인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경영동 중국변호사 채광호 중국변호사 장욱염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인 마약밀수 형사사건 대리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인 마약밀수 관련 형사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장욱염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최고층 사무용 건물 보유 법인 지분 매각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캄보디아 최고층 사무용 건물인 골드타워 42빌딩 보유 목적 설립 법인 지분 매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이민경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중국 「외국투자법(초안)」 공개

(법무법인 지평 **경영동** 중국변호사)

중국정부는 1979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공포하여 시행한 이래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중국 외국인투자법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잡한 투자사전인허가제도에 대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회사법 등 국내 관련 법률과의 상충 문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합병으로 발생하는 국가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미, 중-EU 양자간 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이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 진입 전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등 대내·외의 환경 변화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복잡한 외국인투자법률제도에 대한 통합 및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초안)」을 발표하고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외국투자법(초안)」은 총 11장, 170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총칙,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의 정의, 투자진입관리, 국가안전심사, 투자자의 보고의무, 투자촉진, 투자보호 등 외국투자 관련 근간내용과 투자과정에서 투자자 신고접수처리, 감독규제, 법률책임 및 부칙 등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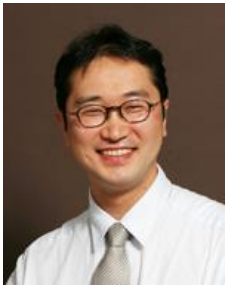
특히 「외국투자법(초안)」 제6조는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투자 진입전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단, 내국민대우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법 제23조[목록제정절차]에 따라 제정된 외국투자특별관리조치목록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아닌 투자내거티브리스트제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투자법(초안)」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리스트에 명시된 산업을 제외한 기타 산업은 중국 내국민과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기존에 합법적으로 존속하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투자법(초안)」 제157조는 “동 법 시행 후 3년 내에 회사법, 합명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기업조직형식과 조직기관을 변경”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법 상의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두지 아니한 현재 중외합자기업 또는 중외합작기업, 또는 감사회를 두지 않은 외자기업은 상응한 기업조직 및 의사결정 체제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영업집조 취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초안)」이 정식 입법되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근간으로 한 기존 외국인투자법률제도의 통합뿐 아니라 회사법, 합명기업법, 증권법 등 기본 법률의 큰 틀에 정합하여 내·외자법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번잡한 투자사전인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관리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는 기존 외국인투자법률제도에 대한 단순한 개정, 통합이 아닌 환골탈태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주택법 개정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베트남 국회는 지난 2014년 11월 26일 18개의 법률과 11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중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제한을 대폭 해제한 주택법 개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 주택법은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고, 침체된 현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개정 법률은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 추이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택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소유 허용 외국인의 범위

개정 주택법은 외국인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들에게 주택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아래에서 살펴볼 소유 기간, 임대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① 외국인 개인
 - (i) 베트남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
 - (ii) 베트남인과 결혼한 사람
- ② 외국인 단체 :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 회사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 외국 투자 펀드, 외국 은행의 현지 지점
- ③ 외국인 투자자 : 주택 개발사업에 투자한 개인 및 단체

다만 외국인 개인의 경우 “출입이 허용된 사람”의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즉 좁게 해석하자면 구체적인 입국을 전제로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넓게 해석하자면 특별히 베트남 또는 본국법이나 국제조약에 의해서 출입국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의 입법과 유권해석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외국인 소유 한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아파트 : 1동의 30%
- ② 기타 주택 : 해당 Ward(洞) 내 250채

그런데 위 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외국인 1인에 대한 것인지, 외국인 전체에 대한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외국인이 1인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면, 4명의 외국인이 각각 아파트 1동의 25%씩 소유하여, 아파트 전체가 외국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전체가 소유할 수 있는 범위가 1동의 30%라고 해석된다면,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기존 외국인들이 소유한 수량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거래소와 달리 특정 아파트에 대한 외국인 소유 수량을 공시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이 쉽지 않아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외국인 소유 기간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소유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① 외국인 개인 중 베트남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 : 50년

- ② 외국인 개인 중 베트남인과 결혼한 사람 : 무제한
- ③ 외국인 단체 : 해당 단체의 인허가 기간

소유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장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의 입법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간 연장이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면, 주택 소유권은 실질적으로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의 사용권에 불과하게 되며, 그 경제적 가치도 기간이 지날수록 상각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출입 허용자)이 주택을 소유하다가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혼인자)에게 매각을 한다면, 매수자는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할텐데, 이는 소유권이 감가상각된다는 개념과 모순됩니다.

소유 기간의 연장 없이 만료되면 국가가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국가의 보상 의무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4. 외국인의 임대 가능성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소유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① 외국인 개인 중 베트남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 : 임대 가능. 단, 사전에 관할기관에 통지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 ② 외국인 개인 중 베트남인과 결혼한 사람 :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대 가능
- ③ 외국인 단체 : 직원 숙소로만 사용 가능하고 임대 불가능

외국인 개인이 주택 임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의 입법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단체의 임대가 금지되는 것은, 완공된 건물(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부연하면, 직접 주택 건설을 시행한 뒤 이를 분양(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부동산사업자의 경

우에는 자신이 개발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5. 현행법과의 차이

현행 주택법에서는 현지 회사에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현지 근무나 상주와 같은 자격 요건을 부가하지 않고, 소유 목적에 대한 제한도 해소하여 임대도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세부 규정의 입법과 유권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 ■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경제제재대상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지평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1. 개요

미국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 지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3662호(Executive Order 13662)를 공포하였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2호에 따라 미국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에 대한 세부적인 경제제재 내용을 확정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중 OFAC는 2014년 7월 16일 및 2014년 9월 12일 자로 러시아 경제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담은 4개의 지침(Directive)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의 대상이 된 주요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침 제1호(Directive 1)의 제재대상 산업: 금융
- 지침 제2호 및 제4호(Directive 2 & 4)의 제재대상 산업: 에너지
- 지침 제3호(Directive 3)의 제재대상 산업: 방위산업 및 관련 방산물자

이번 글에서는 지침 제1호의 핵심 내용과 동 지침이 러시아 경제제재대상 금융기관 달러화 표시 보증서 발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1)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2호에 따른 OFAC 지침 제1호의 제재대상

지침 제1호는 (i) 미국인(US Person)이 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 (ii)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 목록

록에 포함된 특정인(이하 “제재대상자”)과 iii) 특정 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재대상자는 OFAC이 작성하여 공개하는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SSI) 명단에 포함된 자를 의미하는데, 현재는 러시아 핵심 금융기관(국영은행)들이 OFAC 지침 제1호의 제재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 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거래에는 만기 30일 이상의 대출(Debt) 제공 또는 제재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지분(Equity) 발행과 관련된 거래나 자금조달 등이 해당됩니다.

2) 한국인(개인 및 법인 포함)에 대한 제재 제1호 적용 여부

원칙적으로 지침 제1호는 미국인에 의한 행위 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미국인(US Person)이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Entity)(해당 법인 등의 해외 지점 포함), 미국에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래주체 관점에서 한국인은 지침 제1호에 따른 ‘미국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거래지 관점에서 미국 영토 밖에서 제재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지침 제1호가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이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 또는 한국 법인이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해당 법인 등의 해외 지점 포함)은 미국인에 해당되고, 한국인이더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는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들과의 일정 유형의 거래는 금지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 vs 특별지정대상자 차이

OFAC는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와는 구분되는 특별지정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지정인으로 지정된 개인 및 법인과는 사실상 거의 모든 거래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와 특별지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제재명령에서 규정한 특정 산업 내 특정 거래행위만 제한 받는 반면 후자는 거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므로 파급효과면에서는 더

광범위한 제재수단입니다. 일부 개인 및 기업의 경우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와 특별지정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 진행 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경제제재대상 금융기관 달러화 표시 보증서 발행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러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러시아 자회사")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거래 상대방인 러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러시아 법인("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을 수취하고자 하고, 이에 거래 상대방은 러시아 자회사에게 러시아 국영은행이 발행하는 달러화 표시 이행보증서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하나 해당 러시아 국영은행이 미국 OFAC가 지정한 산업분야별 제재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 제1호에 의한 적용 여부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인 해당 여부

러시아 자회사는 러시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러시아 법인으로 지침 제1호에서 정의하는 미국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러시아 자회사의 모회사인 한국 법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 되었으므로 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침 제1호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한국 법인이 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미국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미국 법인은 지침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되나, 해당 거래에 미국 법인이 거래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한 지침 제1호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미국에 설립된 자회사(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 법인과 러시아 자회사가 지침 제1호에서 정한 미국인 범주에 포함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미국 영토 내 거래 해당 여부

산업분야별 제재대상 금융기관의 이행보증서 발행 또는 해당 이행보증서의 현금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 행위도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지침 제1호에 따른 '미국

영토 내 거래' 제한규정이 러시아 자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침 제1호에서 정의한 제한 거래 여부

행위의 주체가 미국인이 되거나, 행위의 일부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 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침 제1호의 제한은 포괄적인 거래 금지가 아닌 특정한 유형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침 제1호에 따라 산업분야별 제재대상 금융기관(러시아 국영은행)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라 할지라도, 이는 산업분야별 제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거래나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분취득 혹은 그와 관련된 자금조달 등의 거래가 아니고,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것이므로 경제제재대상 금융기관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를 수취하고 달러화로 현금화 하는 것이 지침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거래로 볼 여지는 상당히 낮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3. 결론

지침 제1호에 따른 제재의 내용은 제한적이므로, 미국인 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한국 법인 및/또는 러시아 법인(한국 법인의 자회사)이 지침 제1호로 정한 산업분야별 제재대상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에는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 뿐 아니라 특별지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러시아 개인 및 기업이 2개의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은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BIS) 국무부 산하의 방위무역관리국(DDTC)에 의한 수출 통제도 시행·적용하고 있고, EU 및 개별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 종류, 내용에 따라 미국의 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규제 여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상해자유무역구 범위 확대, 금융업 추가 개방

최근 국무원은 상해자유무역구 범위를 28.78km²에서 120.72km²로 3배 정도 확장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육가취금융구, 금교개발구, 장강고신구가 상해자유무역구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향후 금융서비스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무역투자의 편리 도모, 금융업의 대외 개방을 한층 확대함으로써 국제경쟁에 대한 상해자유무역구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법(초안), 대부분 외상투자 인허가 취소

지난 1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외국투자법(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하였습니다. 「외국투자법(초안)」은 기존의 외자 3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외국투자자에 대한 사건별 인허가제도를 취소하고,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에 맞는 외자진입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증합일(三證合一)” 전국에서 시행 예정

2014년 6월경에 국무원이 공포한 제20호 문건에서는 국가공상관리총국과 중앙기구 편제위원회에 기업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과 세무등기증, 이러한 3개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3증합일”의 등기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29일, 강소성은 수첸, 타이저우, 수저우공업원구, 양저우 등 10개 지역에서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과 세무등기증 3개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3증합일”의 등기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상총국은 시범지역에서의 시행 효과를 토대로 올해 “3증합일” 제도를 전국적 범위로 확대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등록제 가동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는 최근 「중신은행 등 27개 은행에 대한 자산증권화 업무 자격 부여 승인」 결정을 발표하여 중신은행(中信銀行), 광대은행(光大銀行), 화하은행(華夏銀行) 등 27개 은행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은감회의 이번 조치는 자산증권화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ABS 발행자격이 있는 은행은 ABS 발행에 앞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ABS 발행 전 등록만 하면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계기로 2015년 ABS 발행이 정상화될 것이며 발행규모도 인민폐 4,000억~5,000억 위안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중 도시상업은행과 농업상업은행의 발행규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증권거래소에서 발행하는 ABS발행규모도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시행령(Sub Decree on Tax Incentives In Securities Sector) 시행

캄보디아 재경부가 공포한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시행령(Sub Decree on Tax Incentives In Securities Sector)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경우 2015년 1월 8일부터 3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되었고, 5년간 세무서 조사 결과 추가 이익이 확인되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를 면제 받으며, 3년간 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위해 주식 프리미엄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위 시행령으로 캄보디아 주식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PRAKAS on Determination of Minimum Wage for Workers/Employees in the Textile, Garment and Footwear Industries in 2015)

캄보디아 사회복지부가 공포한 2015년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2015년 최저임금은 미화 128달러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위와 같은 최저임금 규정의 시행으로 캄보디아 제조업의 핵심인 섬유, 봉제 등의 산업에서 경쟁국인 미얀마, 방글라데시에 비해 캄보디아가 계속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